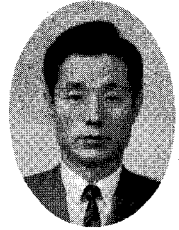


企業經營과 税金講話 2



李文宰

韓國税金會計研究會會長

第4講 所得稅라는 税金

우리나라의 현행 所得稅는 이를 分類所得과 綜合所得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分類所得稅의 課稅物件 곧 所得의 種類는 5 가지 인데 不動產所得 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其他所得으로 나누어 진다. 종합소득세는 이들 分類所得의 合計額이 年間 5 百萬을 넘는 사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稅制改革에서는 과세대상을 3 百萬원으로 할것 같이 들러지기도하나 確實하지는 않다.

이와같이 소득세는 5 가지의 분류소득이 있는 者에게 각각 當該 分類所得稅를 과세하고 다시 분류 소득을 합제한 금액이 연간 5 百萬원이상인 자에게는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분류소득의 하나 하나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의 과세방법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不動產所得稅

不動產所得은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 ① 土地와 그 定着物 곧 建物등의 貸與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 ② 登記된 船舶의 貸與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 ③ 登録된 航空機나 自動車의 貸與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 ④ 鉱業財團과 工場財團의 貸與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 ⑤ 鉱業者, 租鉱權者 또는 德大가 採掘에 관한 權利를 貸與함으로써 인하여 생기는 所得
- ⑥ 廣告宣傳을 위하여 不動産을 使用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 ⑦ 地上權 地後權의 設定 또는 不動産上의 權利의 貸與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 ⑧ 不動産 또는 不動産上의 權利를 貸與하여 保證金先貰金 伝貰金기타 이에 類似한 金額을 받은 경우에는 그 金額에 月2.5%를 곱한 金額에서 必要經費를 공제한 金額

과세소득의 범위는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데 소득은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課稅期間이 年2期(1月~6月, 7月~12月)이므로 6個月間의 賃貸料등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것이 소득금액으로 된다.

稅率은 다음과같이 超過累進稅率로 되어있다.

10만원이하의 金額	16.5%
10만원초과하는 "	22%
25만원 " "	33%
60만원 " "	44%
150만원 " "	55%
250만원 " "	60.5%

필요경비는 총수입경비에 대응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記帳이나 申告가 불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바 認定課稅라고하는 政府推計決定을 하게 되는데 추계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표준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게 되어있다.

- (가) 垔地의 貸與—收入金額의 20%
- (나) 家屋의 貸與로 인한 경우

- ① 家主所有의 垔地인때—收入金額의 40% 相当金額
- ② 他人所有의 垔地인때—收入金額의 50% 相当金額

(다) 船舶의 貸與—收入金額의 60% 相当金額

〈例 ①〉

自家垔地上的의 自家建物を 保證金 2百万원에 月賃 2만원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면 한 課稅期間(6個月)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月賃 } 20,000 \times 6 \text{ 月} = 120,000 \\
 & \text{保證金 } (2,000,000 \times 2.5\%) \times 6 \text{ 月} = 300,000 \\
 & \text{收入金額計 } 420,000 \\
 & \text{必要經費 } 420,000 \times 40\% = 168,000 \\
 & 420,000 - 168,000 = 252,000 \dots \text{所得金額} \\
 & 100,000 \times 16.5\% = 16,500 \\
 & 150,000 \times 20\% = 33,000 \\
 & 2,000 \times 33\% = 660 \\
 \hline
 & \text{納付稅額 } 50,160
 \end{aligned}$$

〈例 ②〉

垔地를 月賃없이 保證金 5百万원에 貸與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같이 된다.

$$\begin{aligned}
 & (5,000,000 \times 2.5\%) \times 6 \text{ 月} = 750,000 \dots \text{收入金額} \\
 & 750,000 - (750,000 \times 20\%) = 600,000 \dots \text{所得金額} \\
 & 100,000 \times 16.5\% = 16,500 \\
 & 150,000 \times 22\% = 33,000 \\
 & 350,000 \times 33\% = 115,500 \\
 \hline
 & \text{納付稅額 } 165,000
 \end{aligned}$$

所得과 稅額의 계산은 위 例示에서 알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法定標準經費額이 없는 財産의 貸與所得에 대하여 추계결정할 때에는 年2期로 分하여 國稅庁長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소득세의 申告와 自進納付는 每年 第1期分은 8月末까지, 第2期分은 翌年 2月末日까지로 되어 있으며 한 기간의 수입금액이 450만원 이하인 자가 이와같은 법정기한내에 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를 할 때에는 신고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그리고 한 기간의 소득금액이 2만원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免稅點이라고 하는 課稅

最低限에 해당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한 田畝의 貸付나 利用을 하게 함으로서 생기는 所得은 非課稅로 한다.

II. 配当利子所得

配当利子所得은 이를 甲, 乙, 丙種으로 나누어 甲種은 国内支給의 社債利子, 預金積金の 利子, 債券의 利子, 信託利益과 内国法人으로 부터 받는 配当 또는 剰余金の 分配이며 乙種은 外国法人으로 부터 받는 配当 또는 分配, 外国法人의 社債利子, 国外의 預金利子 및 信託利益등이고 丙種은 非營業貸金の 利子에 대하여 課稅한다.

이 가운데서 國債와 政府가 保證하는 債券의 利子 및 割引額, 預金積金등의 利子, 公益信託 및 合同運用信託의 信託財産에서 생기는 所得과 証券投資信託業法の 規定에 의한 受益者가 받는 証券投資信託의 信託財産에서 생기는 所得, 法人稅法上的 公開法人과 証券去來所에 上場되고 있는 法人으로 부터 받는 配当金, 開墾 및 干拓事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그 事業으로 부터 생하는 利益配当 또는 分配金, 金融機關이 周旋 또는 募集한 社債券의 利子(但 總發行額의 10%以内所有者에 限함)등은 内資動員에 따른 貯蓄増大라는 政策的 理由에서 非課稅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稅制改革에서는 預金 積金등의 利子에 대해서는 課稅할 方針인양 傳聞되고 있으나 그 改正与否는 두고보아야 알겠다.

배당이자소득의 세율은 일률적으로 16.5%로 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甲種과 丙種은 一般源泉徵收義務로 되어 있음으로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가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하여 翌月10日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丙種은 非營業貸金の 이자임으로 흔히 말하는 私債의 이자를 말한다. 따라서 私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하는 이자액에 16.5%를 곱한 것을 세액으로하여 源泉徵收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사채이자를 두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企業体에서 장부상 기록되고 있는 것뿐

이며 그밖의 사채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아니하는 까닭은 私的去來를 세무당국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甲種과 乙種配当에 있어서는 사실상 배당을 받지 아니 했는데도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로 되는 것을 擬制配当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도 16.5%를 源泉徵收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法人稅法上的 公開法人이 아닌 非公開法人에 있어서는 毎決算期의 留保所得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5.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紙上配当이라고 한다. 먼저 擬制配当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본다.

① 減資를 할 때 出資金額보다 超過하여 還給하는 金額

② 会社의 留保利益을 資本金에 轉入하고 株主에게 無償株를 發行하였을 때

③ 会社가 解散을 할 때 残余財産의 還給金이 株金을 超過하는 金額

④ 会社가 合併할 때 合併 또는 新設하는 会社가 合併으로 吸收하는 株主에게 交付金을 주거나 元株式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株式金額

〈例〉

① 甲会社는 納入資本金 1億圓中 2分1을 減資하기로 決議하고 帳簿價額 5千萬圓의 土地를 減資 還給金條로 株主에게 讓渡하였다. 그러나 그 土地는 時價가 8千萬圓이라고 한다면 超過額 3千萬圓은 擬制配当으로 되어 감중배당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会社는 3千萬圓의 所得漏落으로 취급되어 법인세가 추징된다.

② 乙会社는 資本計定上 積立되어 있는 利益準備金 5百萬圓, 資本準備金 5百萬圓 都合 1千萬圓을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資本金에 轉入하고 登記를 끝냄과 동시에 株主에게 이를 無償株로서 發行하였다. 이경우는 株主가 받는 無償株는 株式로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擬制配当으로 된다. 따라서 甲勤稅(16.5%)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③ 丙会社는 納入資本金이 1千萬圓인데 解散을 하고 清算을 한바 殘 財産價額이 2千萬圓 임으로 株主에게 株金の 倍額을 還給하였다. 이경우는 資

本金を 超過하여 還給된 1千万원이 擬制配當 으로 된다.

④ 甲会社와 乙会社는 合併을 하고 乙会社는 消滅하였다. 그런데 乙会社의 株主는 甲会社로 부터

1株(額面千圓)에 대하여 2株의 新株를 받고 그 밖에 現金으로 1株당 5百圓씩 받았다. 이 경우는 더 받은 1株와 交付金 5百圓이 擬制配當으로 된다.

「紙上配當」은 이익배당을 아니했는데도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 배당이자소득세(5.5%)를 과세하는바 위에서 말한 의제배당은 실질적인 배당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나 지상배당은 배당을 하지 않고 會社内部에 留保시키기고 있는데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모순인 줄 알면서도 이 제도가 생겨난 까닭은 종합소득세제의 실시상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써 세율만은 다른 배당이자소득이 모두 16.5%인데 反하여 5.5%로 낮추고 있다.

지상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은 非公開法人의 留保된 소득에서 法人稅額과 商法上的 利益準備金(法定積立이라고도 하며 利益의 5% 이상을 資本金의 ½에 達할때까지 積立하여야 함)을 공제한 나머지가 지상배당으로 된다.

(算式)

各事業年度の 所得(非課稅, 免除所得包含) - 利益処分の 賞與, 配當 其他社外流出 = 留保所得

留保所得 - (法人稅額 + 利益準備金) = 紙上配當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各事業年度の 소득에는 세무계산상의 欸금가산도 포함되며 이익처분의 社外流出 외에 세무계산상 流出로 된것도 이에 포함한다는 점과 법인세액은 當該事業年度の 法人稅 相當額을 말하며 利益準備金은 會社가 이익처분으로 한 금액을 말하되 資本金의 ½에 達할 때 까지의 金額만을 말한다.

Ⅲ. 事業所得

事業所得은 商, 工, 山林, 畜産, 自由職業, 其他

事業등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곧 이들 사업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다.

1. 課稅所得의 範圍

事業所得의 과세범위를 좀더 상세히 말한다면 營業稅法에 의해서 營業세가 課稅되는 營業로부터 생기는 所得과 山林業, 畜産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自由職業과 其他事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다. 이 가운데 自由職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각종 소득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著述, 書画, 凶案, 彫刻, 作曲, 音樂, 舞踊, 漫画, 挿画, 漫談, 俳優, 聲優, 歌手와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② 演藝에 관한 監督, 脚色, 演出, 撮影, 錄音, 裝置, 照明,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③ 設計監督, 建築監督, 技術指導, 技術用役提供(技術研究用役은 除外한다)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④ 音樂, 裁斷, 舞踊, 料理, 社交舞踊, 마둑의 教師와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⑤ 職業運動家, 力士, 騎手, 運動指導家(審判을 포함한다)와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⑥ 接待婦, 댄사와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⑦ 保險加入業者의 募集, 貯蓄의 獎勵 또는 集金 등을 하고 実績에 따라 保險會社 또는 金融機關으로부터 받는 募集手當, 勸獎手當, 集金手當(內勤社員이 支給받는 경우를 除外한다) 또는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⑧ 일의 成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받는 手當과 이에 유사한 性質의 代價로 받는 所得

또한 「其他事業」으로 부터 생기는 所得은 다음과 같다.

① 醫療業, 調劑業, 接骨業, 按摩業, 鍼灸業과 기타 醫術業으로부터 생기는 所得

② 辯護士業, 公証人業, 執達吏業, 辯理士業, 司法書士業, 鈇業代書士業, 行政代書士業으로부터 생기는 所得

③ 公認會計士業, 稅務士業, 評價人業, 通関業과 기타 이에 유사한 業으로부터 생기는 所得

④ 技術士業, 建築士業, 導船士業, 設計製図士業, 測量士業과 기타 이에 유사한 業으로부터 생기는 所得

⑤ 廣告業과 新聞支局을 經營하여 생기는 所得

⑥ 学院, 講習所, 敎習所, 相談所, 職業紹介所와 興信所를 經營하여 생기는 所得

⑦ 鳥類의 飼育과 못, 늪, 논 등을 利用한 금붕어, 鯉魚등의 養魚와 魚類 및 水草類의 捕獲事業을 經營하여 생기는 所得

⑧ 부화기를 利用한 부화(畜産法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蚕種의 생산으로 생기는 所得

⑨ 作名, 靚相, 占術, 巫堂, 運命鑑定을 業으로 하여 생기는 所得

⑩ 狩獵, 川獺 등 이와 유사한 業으로부터 생기는 所得

⑪ 개, 닭, 말 등 家禽이나 動物의 訓練을 業으로 하여 생기는 所得

⑫ 養蚕事業에서 생기는 所得

2. 必要經費의 計算

事業所得은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것이 된다. 필요경비는 各期中의 總收入金額에 대응하는 費用의 合計를 말하는데 稅法上의 몇가지 制限을 제외하고는 企業會計上의 期間計算主義에 의한 비용과 다를바 없다. 稅法上의 制限이란 事業所得者 自身の 給与를 비롯하여 寄附接待費등의 限度 超過額, 減價償却範圍超過額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는 法人稅法과 거의 같으므로 追後法人稅篇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必要經費에 대한 개별적인 구체적 내용을 알려면 現行 法令上 다음에서 明示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① 所得稅法施行令 第45条 내지 第66条

② 所得稅法 第19条의 3 내지 第21条

③ 所得稅法施行規則 第58条 내지 第67条

3. 稅率

事業所得稅의 稅率은 不動產所得稅와 同一하다.

4. 申告納付와 帳簿의 備置

申告와 納付의 期限은 不動產所得과 동일하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申告期限内에 稅務署長에게 신청하여 申告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事業場別로 「外形金額에 따라 複式簿記, 簡易帳簿, 日記帳에 의한 帳簿를 備置하고 事業에 관하여 모든 去來事項을 記載하여야 하는바

① 業種이 運送保管業과 기타 서비스業中 都給代理 仲介 및 物産客主業에 있어서는 直前期 또는 直前前期의 外形金額이 千萬원以上

② 그밖의 事業에 있어서는 2千萬원 이상인 때 複式簿記의 義務가 있다.

다음에 위 ①의 業種의 外形金額이 450萬원 ②의 業種은 900萬원 이상인 때에는 簡易帳簿를 이들의 경우보다 이하인 者는 日記帳을 備置記帳하여야 한다.

日記帳 義務者가 日記帳을 記帳한데 대하여는 그 帳簿에 의하여 算出된 所得金額에 상당하는 稅額의 10%를 記帳控除로서의 혜택을 주며 日記帳義務가 期限内 自進申告納付를 할 때에는 다시 10%를 控除한다. 반면에 複式簿記와 簡易帳簿 義務者가 記帳을 不履行한데 대하여는 不履行加算稅로서 5%, 또 申告를 아니하거나 적게한 경우에는 10%를 加算稅로서 添加한다.

5. 推計決定

稅額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간내에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推計決定(認定課稅)을 한다.

推計決定의 方法은 외형거래액에 國稅庁이 조사결정한 所得標準率을 곱하며 所得金額을 결정한다. 소득표준율이란 業種別로 또 課稅期間別로 國稅청이 결정하는 業種別의 所得率을 말한다.

〈例〉

6個月間의 販賣金額이 2千萬원이고 그 業種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3%라고 한다면 所得金額은 60萬원으로 된다.

6. 非課稅所得

課稅所得範圍에서 열거한 소득중 文芸·學術·美術·音樂 또는 写真에 속하는 創作品에 대한 稿料는 非課稅로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 들것은 이들 非課稅에 해당하는 稿料는 어디까지나 위에서 말한 범위의 創作品에 대한 原稿料라야만 하는 것이다.

〈例〉

① 演芸에 관한 脚色料일 때에는 非課稅로 되지 아니한다. 理由는 創作에 대한 代價(原稿料)가 아니기 때문이다.

② 美術이나 写真에 있어서 複製 또는 複寫하여 販賣하는 것은 創作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課稅를 하는 것이며 國展을 비롯한 各種 展示場에 出品한 東洋画, 西洋画, 書芸 또는 彫刻등의 創作品을 願買者에게 販賣하고 代價를 받는 것은 非課稅로 된다.



「댄」에도 源泉徵收를 해야

7. 一般源泉徵收와 事業所得

一般源泉徵收란 該當 所得金額을 支給하는 者는 누구이고 간에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事業所得中에는 위 과세소득범위에 열거되어 있는 自由職業所得이 一般源泉徵收에 해당한다. 따라서 自由職業所得을 지급하는 者는 그 支給金額에 1.1%의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源泉徵收하여 翌月10日까지 所管稅務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自由職業所得中에서 ④ 및 ⑤에 該當하는 것과 興行業者가 出演者에 支給하는 出演料만은 源泉徵收를 아니한다.

④에 該當하는 것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音樂 裁斷, 舞踊, 料理, 社交舞踊, 바둑의 教師이고 ⑤에 該當하는 것은 職業運動家등인데 그밖의 모든 自由職業所得은 그 所得을 支給하는者가 源泉徵收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支給金額이 6千원 未滿일 때에는 源泉徵收를 아니하여도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稅法의 구체적內容이 얼마나 複雜多岐한가를 느끼게 한다. 事業所得中 自由職業所得에 대해서는 그 1部만을 除外하고 나머지는 一般源泉徵收의 義務가 있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義務不履行을 모르는 사이에 敢行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 例로 自由職業所得에는 接待婦와 댄사가 들어 있는데 많은 술꾼이 이들에게 팁을 주고 源泉徵收를 하여 翌月10日까지 稅務署에 納付한 일이 있는지? 作者가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닐까 한다. 源泉徵收의 免除線이 支給金額 6千원未滿으로 되어 있어 이에 未達하는 支給을 할 때에는 義務가 없지만-

(계속)